

Hong Kong Tax Alert

October 2022 | Issue 21



홍콩의 역외소득비과세제도(FSIE) 변경 법안 초안 발표

개요



향후 시행될 역외소득비과세 제도 개정법안 초안이 2022년 10월 28일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제도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시행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와 회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IRD가 발행한 행정지침 또한 같은 날 발표되었습니다.

본 세무속보에서는 법안초안에 반영된 세부 변경 내용의 개요를 설명하고 IRD가 발행한 행정지침에서 명확히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KPMG의 견해를 논하고자 합니다.

올해 6월 홍콩정부가 시작한 FSIE에 대한 협의사항에 추가하여, 개정세법이 2022년 10월 28일 공표되었습니다. FSIE법안은 IRD의 행정지침과 함께 속독하여야 하며, 이는 IRD의 행정지침이 해당 제도의 실무적 적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서 특정 분야에 이르는 사례를 함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2022년 6월에 공표되었던 FSIE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지난 세무속보](#)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FSIE 제도의 변화 / 추가 세부사항들

아래 내용은 2022년 6월 공표된 FSIE법안에 대한 변동 / 추가 세부사항들의 개요입니다.

대상이 되는 실체

- 홍콩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다국적기업 실체는 해당 제도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
- 홍콩거주기업인 다국적기업의 해외 고정사업장은 홍콩 역외의 해당 관할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다국적기업 실체로 간주되며 – 따라서 해당 고정사업장은 현 FSIE 제도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 (홍콩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
- 적용이 제외되는 법인들의 범위는 BEPS2.0의 Pillar Two상 GloBE (Global Anti-Base Erosion Model Rules)에 근거하며,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이 되는 최상위모회사인 투자펀드와 부동산투자기구 – 다만 해당 실체가 보유한 SPV는 제외되지 않음;
 - 투자펀드와 부동산투자기구의 정의는 홍콩의 unified fund exemption regime상 비과세대상이고, IRO상 collective investment scheme의 SFC 가 인가한 비과세 실체 또한 투자펀드로 간주됨;

1 For the background of the FSIE regime and details of the consultation, please refer to our previous Hong Kong Tax Alert via this link: [The HKSAR Government's proposed changes to the... - KPMG China \(home.kpmg\)](#)

2 The FSIE bill can be accessed via this link: <https://www.gld.gov.hk/egazette/pdf/20222643/es32022264319.pdf>

3 The IRD's administrative guidance can be accessed via this link: [IRD : Foreign-sourced Income Exemption](#)

- 보험투자실체도 제외;
- 현재 홍콩에서 특정 제도에 의해 혜택을 받고 있는 실체⁴는 제외대상임;
- 선박운영업을 통해 이익을 수취하고 IRD의 section 23B에 의해 조세 면제를 받는 실체는 제외대상;
- 다국적기업을 대행하거나 다국적기업 그룹에 포함되는 실체는 해당 제도의 대상임.

대상이 되는 역외소득의 형태

- 대상이 되는 특정 역외소득: 홍콩 역외에서 발생하거나 유래된 이자, 배당, 처분이익과 지적재산권 소득.
- 처분이익은 특정 실체 (별도의 재무정보 산출이 가능한 신탁 포함)에 대한 지분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파트너십 지분의 처분이익은 포함하지 않음.
- 지적재산권소득은 특정지적재산권 (공업용, 상업용 혹은 과학분야와 관련된 모형, 계획안과 정보 또한 포함)의 사용 혹은 사용권으로부터 유래하는 소득을 의미함.
- 규제에 의해 관리되는 금융기관 (은행, 보험, SFC 인가법인)이 영위하는 인가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처분이익은 해당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됨.

“홍콩에서 받은” (“received in Hong Kong”) 의 의미

싱가폴에서 채택한 접근방식에 맞추어, 홍콩에서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 홍콩으로 송금(remitt)되거나, 전달(transmit)되거나 가져온 (bring into);
- 홍콩에서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 (debt)를 상환하는데 사용되거나;
- 동산 (movable property)을 구입하여 해당 자산을 홍콩으로 가지고 온 경우.

순수지주회사 (Pure equity-holding entity)의 정의

순수지주회사(pure equity-holding entity, PEHE)는 (1)다른 실체의 지분을 보유하는 기능만을 하며 (2) 배당, 처분소득과 지분의 취득, 보유 혹은 매각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만이 발생하는 실체를 의미함.

경제적 실질 요건 (The economic substance (ES) requirements)

전반적으로 2022년 6월에 제시된 내용과 동일하며, FSIE법안에서는 (1)경제적 실질은 소득이 발생한 해 (받은 해가 아닌)를 기준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2) 순수지주회사에게 적용되는 경감된 경제적실질 요건 상 법상 자료제출 요건은 회사 등록절차 등을 의미함.

배당소득과 지분처분소득에 대한 참여면제제도

- 참여면제제도에 대한 주요 개선사항은: 피투자회사로부터의소득이 50%미만이 수동적 소득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제거되었으며 다국적기업실체가 해당 피투자회사 지분을 5%이상 보유하고 해당 역외소득이 발생하기 직전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대체되었음.
- 역외원천 배당의 경우:
 - 참여면제요건이 적용되는 조건 중 한가지는 배당의 근원이 되는 이익금액이 배당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며;
 - 15% 과세요건의 경우 –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지 피투자회사의 지분보유 구종 상 4단계까지 고려될 수 있도록 “see-through” 접근방식이 채택됨.

지적재산권소득에 대한 Nexus 요건

- Nexus 요건에 따른 조세면제는 적격 지적재산권소득에만 적용되며, 이는 적격지적재산권 (특허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의 사용 혹은 사용권으로부터 유래한 소득을 의미함.
- Nexus 요건에 대한 주요 개선점은 다국적기업이 홍콩의 역외와 역내 모두에서 수행한 적격 R&D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지출 모두를 인정해 준다는 점임.

⁴ 해당 특혜제도는 corporate treasury centres, aircraft leasing business, ship leasing business, ship brokers/agents/managers 등과 같은 특혜세율을 적용받는 법인들과 향후 도입될 family investment holding vehicles에 해당함.

⁵ SFC 인가법인의 예로는 증권중개 / 거래 혹은 투자관리/자문 법인을 들 수 있음.

- R&D 분수(Nexus 비율) 계산 목적으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30%의 적격 R&D지출로 상향조정이 허용되나, 상향조정 후 (산식의 분자)가 적격 R&D지출 총액과과 부적격지출 (산식의 분모) 금액으로 상한이 제한됨.
- Nexus요건 충족 목적의 R&D 활동 홍콩의 R&D지출 손금산입 요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의됨.

역외 지분과 적격 지적재산권자산 처분에서 발생하는 손실

홍콩역외지분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파트너십 지분 제외)은 추후 과세가능 이익과 상계 가능하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처분소득을 홍콩에서 수령(received)해야 함;
- 해당 처분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FSIE제도에 따라 홍콩사업소득세가 과세 가능한 것이었어야 함;
- 해당 손실은 오로지 FSIE제도에 적용되는 역외소득 중 과세되는 이익과만 상계 가능함.

지적재산권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실 또한 유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계 가능.

이중과세방지와 일방 세액공제

특정역외소득이 홍콩에서 과세되고 역외지역에서도 과세되나 홍콩과 해당 역외지역간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일방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홍콩과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처럼 세액공제를 허용해 줄 것임 - 이는, 일방 세액공제가 홍콩거주자인 다국적기업 실체에게만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함.

- 해당 역외소득이 배당인 경우, 배당에 대해 지급된 역외 조세 뿐 아니라 배당이 지급된 원천이 되는 이익에 대해 피투자회사가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허용되며, 이는 다국적기업 실체가 배당 지급 시점에 피투자회사에 최소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됨.

신고와 자료보관 요건

FSIE제도 상 과세되는 역외소득이 있는 다국적기업은 다음의 의무가 있음:

- 해당 소득이 홍콩에서 수취된 과세기간 경과 4개월 내에 IRD에 서면으로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 해당 소득과 관련된 거래와 영업기록을 (1) 동 거래가 종료된 7년 후 혹은 (2) 해당 소득이 수취되거나 수취된 것으로 간주된 시점 이후 7년 중 더 늦은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함.

KPMG의 논평

홍콩의 consultation 제도를 통해 상당수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또한, 홍콩정부는 언론을 통해 (1)홍콩에서 더 많은 R&D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홍콩 원천의 지적재산권소득에 조세상 특혜와 (2) 홍콩 조세제도의 경쟁력을 위해 홍콩 역내 지분처분에 대한 조세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 또한 고무할만한 상황입니다.

IRD의 행정지침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의 초안은 복잡하며 또한 현안이 많습니다. 다음 세무속보에서는 IRD의 행정지도와 현안 이슈 등에 대해서도 다룰 것입니다.

kpmg.com/cn/socialmedia



For more KPMG Hong Kong Tax Alerts, please scan the QR code or visit our website:
<https://home.kpmg/cn/en/home/services/tax/hong-kong-tax-services/hong-kong-tax-insights.html>



For a list of KPMG China offices, please scan the QR code or visit our website:
<https://home.kpmg/cn/en/home/about/offices.htm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2 KPMG Huazhen LLP, a People's Republic of China partnership, KPMG Advisory (China) Limited, a limited liability company in Mainland China, KPMG, a Macau (SAR) partnership, and KPMG, a Hong Kong (SAR) partnership, are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s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 2022 KPMG Tax Services Limited, a Hong Kong (SAR)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s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sation.